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법령적합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의 개정 에 따라 1개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됨. (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경우 기존 18과에서 17개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개정됨)

□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파주시 행정기구는 현재 3국 18과에서 3국 17과로 변경됨. 이는 정부 제2차 구조조정에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 에 따라 1개과(민방위재난관리과)를 축소하는 것임.
민방위 재난관리과 폐지에 따른 업무이관과 기타 업무 조정은 각과 의 행정능력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여 각 과가 균형있게 업무분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 (각과 사무분장은 규칙 제정사항임)